

건축물 소유주 및 해체·제거업자가 알아야할 석면관리 제도

유지·보수· 리모델링 공사 포함



1 석면조사

석면조사대상

건축물의 철거, 멸실, 리모델링, 대수선, 증축, 개축, 개수, 보수 등의 모든 작업

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·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*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합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]

* 위반시 5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* **석면조사 의무주체**는 건축물의 소유주, 관리자, 임차인, 사업시행자, 재개발·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음

○ 석면조사란?

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, 함유된 석면의 종류·함유량,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대상 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3]

- 건축물 :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㎡ 이상인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㎡ 이상
- 주 택 (그 부속건축물 포함) : 연면적의 합이 200㎡ 이상인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200㎡ 이상
- 설 비 :
1. 단열재, 보온재, 분무재 내화피복재, 개스킷(Gasket), 패킹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,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 이상
2. 파이프로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면서,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

○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및 방법

석면조사 대상 「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」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*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

석면조사 생략사유

설계도서,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

①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(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 첨부)

②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%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* ①, ② 모두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신청서를 현장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②의 경우에도 해체·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

건축물을 철거·해체하려는 자

석면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

석면을 함유하지
않음이 명백

석면이 1% 초과
함유되었음이 명백

석면조사생략대상
확인신청서 및 첨부자료 준비

지방노동관서에 제출

확인·검토

신청인에게 결과 통지

2

석면해체 · 제거 작업

석면이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등록업자로 하여금 해체 · 제거하도록 하여야 하며, 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전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]

※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등록업자에 의한 해체 · 제거 대상

-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, 바닥재,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㎡ 이상
-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
-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단열재, 보온재, 개스킷(Gasket), 패키징(Packing)재, 실링(Sealing)재 면적의 합이 15㎡ 또는 부피의 합이 1㎡ 이상
- 석면이 1% 초과 함유된 파이프로본체 길이의 합이 80m 이상

※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을 수행 할 수 없음

구분	석면해체 · 제거업자 등록요건
인력 기준	①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토목 ·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② 초 · 중등교육법,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토목 · 건축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1명 이상
시설 기준	사무실
장비 기준	① 고성능필터(HEPA 필터)가 장착된 흡입기 ② 음압기록장치 ③ 고성능필터(HEPA 필터)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④ 위생설비(탈의실, 샤워실, 작업복 경의실이 설치된 설비로서 이동식 포함) ⑤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방진마스크 등 ⑥ 습윤장치

○ 석면해체 · 제거업자의 의무

-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신고 (변경)
 -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·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※ 작업 중 신고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, 즉시 변경신고서 제출
- 작업시 작업기준 준수
 - 「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
 - 해체 · 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 하여야 합니다.
-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
 -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
 -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
 -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

○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작업시에도...

- 건물주 등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· 해체하는 자(등록 및 비등록업체 모두 해당)는 동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- ※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※ 건축물 등을 철거 · 해체하는 자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석면조사 결과를 확인, 석면이 포함된 경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※ 지적석면조사기관은 "고용노동부 홈페이지-알려드립니다"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※ 등록해체 · 제거업체는 "고용노동부 홈페이지-알려드립니다"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3

석면농도 기준 준수

석면해체 · 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(0.01개/cm³)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. (실내작업에 한함)
[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5]

※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 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할 수 없으며,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
○ 증명자료란?

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에 의한 「석면농도 측정 결과표」를 첨부한 「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」를 말함

○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

측정자의 자격	측정 방법
-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 환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-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 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	- 석면해체 · 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 (밀폐)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 시킨 후,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



근로자건강보호과 ☎ 02) 6922-0954, 0956, 0959
www.moel.go.kr



산업보건실 ☎ 032) 5100-720
www.kosha.or.kr